

2017년 경찰공무원(경감) 정기 승진시험 문제

- 2교시(경찰행정법)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시험시간 [16:30 ~ 17:50(80분)]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과목 : 경찰행정법(경감)

[문제 I]

시장 A는 광고주 甲의 옥외광고물이 추락 등 안전상 급박한 위험은 없지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철거를 명하였다. 그러나 甲은 해당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았고, 이에 시장 A는 대집행절차에 착수하였다. 한편, 시장 A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영장에 의한 대집행 통지를 함에 있어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을 甲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대집행통지행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甲은 통지행위의 위법을 사유로 하여 이제 ‘막’ 시작된 대집행실행행위로서의 철거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만 위 광고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아님을 전제한다)

1. 甲이 제기한 소송의 소송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상 ‘대상적격’ 과 ‘협의를 소의 이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시장 A가 한 통지행위의 위법 여부 및 정도를 검토하고, 만일 위법하다면 甲은 통지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철거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지 설명하시오. (20점)
3. 시장 A는 甲이 옥외광고물을 자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대집행 외에 직접강제의 방법으로 강제 철거할 수 있을지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정보공개청구와 불복방법 (30점)
2. 행정소송상 가구제 (20점)

※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참고조문 별첨)

<참고조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지광고물등)

- ② 누구든지 옥외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 ① 시장 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옥외광고물 등 또는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옥외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 ①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물 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

- ①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그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